

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박상혁 교육위원회 위원장님!
그리고 교육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국민의힘 성동구 제4선거구, 교육위원회 위원 황철규입니다.
-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-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는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.
- 그러나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의 임용이 전문성과 실무경험 중심이 아닌 이른바 ‘코드 인사’ 논란 속에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.
- 그 결과 감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,

감사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었다는 우려가 지속되었으며, 이에 따라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또한 약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

- 아울러 상근직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재정 소요에 비해 제도의 실질적 성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못하면서, 비용 대비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
- 또한 비상근 청렴시민감사관의 구성 규모 및 자격 요건이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.
- 이에 본 개정안은 상근직 제도의 한계를 정비하고, 비상근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자격 요건과 책임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제도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- 이를 통해 형식적 운영이 아닌 실질적 감사 기능이 구현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.
-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, 청렴시민감사관을 비상근으로

일원화하고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여 조직 규모를 합리화하였습니다. 또한 자격 요건을 전문성과 실무경력 중심으로 정비하여 감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.

- 둘째, 비상근 청렴시민감사관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, 결원 발생 시 후임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.
- 셋째, 감사에 참여한 비상근 시민감사관이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, 감사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.
-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, 상근직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고, 비상근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감사 기능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- 또한 활동결과보고 의무화를 통해 감사 활동의 실질적 성과를

체계적으로 관리·평가할 수 있어 교육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를 한층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.

- 궁극적으로는 공공감사 체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민참여 감사제도로 재정비함으로써 서울교육 행정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강화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.

- 이상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. 교육행정의 책임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정비라는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